

2025년도 「재난안전기업 사업화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 『② 해외규격인증 컨설팅』 참여기업 공모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0조(창업 및 사업화 지원 등)에 따라, 재난안전기술 및 제품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2025년 「재난안전기업 사업화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 사업 중 해외규격인증 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4월 8일
행정안전부 장관

1 사업 개요

- (목적) 우수 재난안전기술의 상용화, 제품화, 판로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해소하여 재난안전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 추진
- (주최/주관) 행정안전부/(사)한국능률협회
- (지원내용) 기업별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 공통교육, 전문가 특강, 간담회 등 재난안전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무료 지원
- (컨설팅 분야) 사업화 역량강화 컨설팅 (공공조달, 재난안전 인증, 마케팅 등), 해외규격인증 컨설팅 분야 구분을 통해 기업별 희망 분야 맞춤 지원
 - (① 사업화 역량강화 컨설팅) 공공조달, 재난안전인증, 마케팅, 해외수출 등 기업의 니즈에 부합하는 세부 컨설팅 분야 설정 후, 기업별 희망 분야 지원
 - (② 해외규격인증 컨설팅) 해외시장 진출 시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해 수출 확대 기여

* '사업화 역량강화 컨설팅'과 '해외규격인증 컨설팅' 중복 신청 불가

2 『② 해외규격인증 컨설팅』 지원 개요

- (해외규격인증 컨설팅)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규제 검토, 절차 및 필요서류 구비 방안, 정보 제공 등 지원
- (인증 취득 소요 비용 지원) 해외규격 인증 취득을 위한 소요 비용의 최대 80% 지원(인증비, 시험비 등)
 - ※ 제품 1개, 인증 1개만 지원 가능, 기업당 최대 5백만원 상당의 컨설팅 및 소요비용 지원
- (인증지원 분야)
 - ※ 이외의 규격인증은 지원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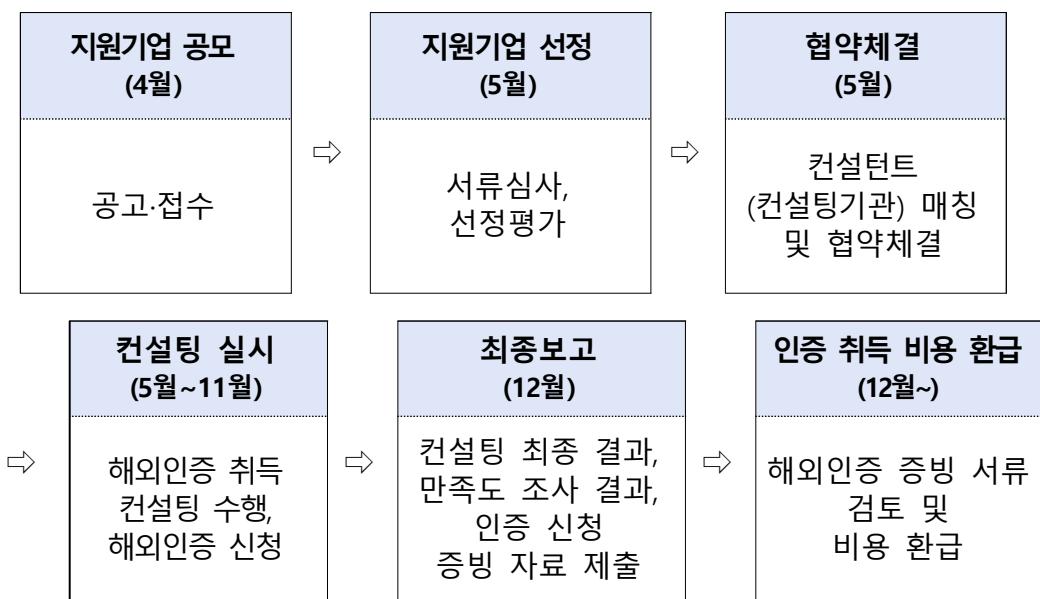
국가별	규격명	제품분야
미국	FCC (미국통신위원회 전자파적합성인증)	Unintentional radiators, Intentional radiators
	FDA (미국식품의약국허가·등록제도) -의료기기 Class1-	의료기기
유럽	CE (유럽통합규격인증)	전자기기, 의료기기, 체외 진단기기, 방폭기기, 건설자재, 개인보호장비, 기계류
일본	PSE (일본전기용품안전인증)	전기전자
국제	IECEE-CB test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	전기전자

인증건수	제품수	기업당 지원 비용한도	지원한도
1건	1개	5백만원	부가세를 제외한 소요비용의 80%
(1) 제품 1개, 인증 건수 1개만 지원 가능			
(2) 제품분야 해당 여부는 재난안전산업 관련성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검토 예정			
(3) 컨설팅 지원 내용 : 희망 인증 취득을 위한 절차 및 필요서류 구비 방안, 정보 제공 등 지원 ※ 본 컨설팅 프로그램은 시험 신청, 필요서류 작성 및 제출 등 대행은 지원하지 않음.			
(4) 비용지원항목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 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이나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 소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한 비용			
(5) 비용지원 유의사항			
- 과제 수행기간은 당해연도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25년 11월 30일까지 인증을 획득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공고일 이전부터 착수하여 2025년 11월 30일 이전까지 획득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인 인증 건에 대해서도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전문가 컨설팅(대면) 진행

지원 프로그램	지원 내용
1:1 맞춤형 컨설팅 및 인증 취득 소요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재난안전기업의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해외규격 인증 발급을 위한 소요 비용의 80% 지원 (인증비, 시험비) - 기업당 최대 5백만원 상당의 컨설팅 및 소요비용 지원 - 기업당 제품 1개, 인증 1건 취득 지원
공통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안전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및 해외조달 분야 진출을 위한 전략 및 최신 현황 공통교육
기업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기업 간 정보 공유 등 네트워킹 장 마련 - 해외규격인증, 공공조달 분야 전문가들의 특강을 통한 기업 역량 강화 지원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 육성 정책(사업) 안내
컨설팅 사례집 및 수료증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진행 내용과 성과 등을 담은 사례집을 발간하여 컨설팅 성과 확산 - 컨설팅 프로그램 수료증 발급

○ 사업 추진 일정



※ 컨설팅 최종 결과 보고 : (사)한국능률협회

※ 세부일정은 사업 여건 및 프로그램 진행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3 모집 개요

○ (신청기간) 2025. 4. 8.(화) ~ 4. 30.(수) 18:00까지

※ 신청자 이메일 발송시각 기준으로 마감일 18:00까지 신청서 제출 완료 기업만 인정,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신청방법) 온라인 (이메일 safetykorea.apply@gmail.com) 제출

- 신청서 및 제출서류(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다운)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온라인 제출 시 메일 제목 준수 요망

- 메일 제목 : (기업명) 2025년 재난안전기업 사업화 역량강화 컨설팅 신청_②해외규격인증 컨설팅

○ (제출서류) ※ 필수 제출

연번	제출서류 비고
①	재난안전산업 사업화 지원 신청서(「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②	[붙임1] 신청 개요
③	[붙임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④	[붙임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⑤	[붙임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⑥	[붙임5] 해외규격인증취득지원사업 이행확인서
⑦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⑧	중소기업확인서

○ (기타서류) ※ 해당 시

연번	제출서류 비고
①	공장등록증
②	수출실적 증명서('22년 ~'24년) 해외특허(출원 또는 등록증, 전용실시권포함) 또는 해외상표(출원 또는 등록증, 전용실시권포함)
③	제품카탈로그(외국어)
④	기타 보유증서 및 지정서 증빙자료 (재난안전제품인증서 등) 시험·인증기관 접수증 또는 견적서
⑤	※ 인증 요청 대상 제품에 한함, 시험기관 또는 인증기관의 견적서만 인정됨

○ (작성요령) 신청서 및 제출서류 붙임 1~5 양식에 맞춰 작성

- 신청서, 붙임 서식 2, 3, 4, 5에 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하여 스캔본으로 제출

4 신청 자격

- (신규지원) 재난안전 분야 기술·제품을 보유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으로 아래 사업화 대상에 해당하며 해외진출 역량을 보유하고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술·제품 사업화 기업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제품 사업화 기업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제품 사업화 기업 등

▶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에 해당하는 기업

- [참고자료]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 및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69244/fileData.do>) 참고

▶ 모집공고 이전부터 착수하여 2025년 11월 30일 이전까지 획득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인 인증 건에 대해서도 신청 가능

- (심화지원) 2024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기업 사업화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사업' 중 '해외규격인증 컨설팅' 참여기업(2024년 컨설팅 수료증 보유 기업)
- (신청제외 대상) 하단 조건에 1개 이상 해당 시 본 사업 신청 불가

<신청 제외대상 안내(필독)>

- ▶ 정부로부터 본 사업과 유사한 컨설팅 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은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자
 - 기업의 부도,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 법정관리/화의기업
- ※ 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제외
-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전년도 감사의견이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

※ 유의사항

- 주최/주관기관은 선정 및 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청 요건 검토 등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 시 신청(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취소 및 향후 동일 사업 지원 불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변경이 불가하며, 접수된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는 반환되지 않음.
- 신청서류를 조작하여 과다 허위 신청한 경우 지원 제외 및 임의 중단하며, 향후 2년간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의 제재 조치 대상으로 분류
- 「공공재정환수법」개정 및 시행(2024.09.27.)으로 부정청구 등은 관련법에 따라 부당이익금(이자율 포함)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당이익금의 최대 5배)이 부과·징수될 수 있음
- 과제 수행기간은 당해연도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25년 11월 30일까지 인증 획득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기타 세부 자격 및 가이드는 [별첨 1] 참고

5 모집규모 및 선정절차

○ (모집규모) 총 10개 기업

※ 중도 포기를 고려하여 예비기업 선발 예정

※ 신규지원 기업 : 8개사, 심화지원 기업 : 2개사

※ 서류심사, 선정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 및 지원

○ (선정절차) ‘요건 검토, 선정평가(서면)’를 거쳐 최종 선정

※ 신청 기업은 필요시 전화 인터뷰와 현장심사를 진행 할 수 있으며, 현장진단 위원의 현장진단에 동의하여야 함.

일정	구분	세부 내용
4.07 ~4.30	공고 접수	• 신청서 제출
5월 1주차	서면심사	• 신청서, 지원요건 검토 •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평가위원회 서면 평가 진행
5월 2주차	최종선정	• 선정결과 및 평가 내용 안내 • 종합진단 및 컨설팅 주제 확정
5월	협약체결	• 추진계획 보완 및 3자 협약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6 평가 기준

○ 서류심사 평가 기준

- * 국내 재난안전기업 적합 여부
- * 해외규격인증의 적정성 인증획득 가능성 및 기타 사전 명시된 자격 조건 적격여부 심사
- * 서류심사 양식 형식 요건 적격 여부 및 작성 충실도

○ 선정평가 기준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보유 역량 (60)	기술/품질 (20)	기존 유사·동종제품 대비 성능·품질의 우위성, 제품의 차별성 등
	인증획득노력 (20)	목표 시장 진출 노력도 (인증 취득 사전 준비 여부)
	인증 획득 필요성 및 가능성 (20)	해외수출 품목으로서의 적합 여부 (품질, 기술 수준 등) 수출(예정) 대상 국가로의 수출 확대 가능성 및 수출 경쟁력 (인지도, 품질, 가격)
잠재 역량 (40)	재난안전사업 마인드 (20)	재난안전제품 해외 수출 및 인증 획득 의지 가용자원 및 수출업무 담당자 역량
	수출역량 (20)	수출 실적 및 비중 기반 보유 여부, 수출 준비 활동 등
가산점 항목 (9)	재난안전제품인증 재난안전신기술 취득 기업 (3)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제품인증' 또는 '재난안전신기술' 취득 기업
	박람회 홍보부스 신청 (예정) (3)	2025년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K-SAFETY EXPO) 오프라인 홍보 부스 신청 완료 ※ 심사위원회 선정평가 전일 18시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함
	시험 · 인증기관 접수증 및 견적서 (3)	관련 시험, 인증기관 접수증 또는 견적서 제출

7 사업문의

담당자	연락처	전자메일
한국능률협회 이가영 선임 컨설턴트	02-3274-9383	safetykorea.apply@gmail.com

별첨 1 컨설팅 신청 및 과제 수행 가이드

1. 사업협약 체결

가. 선정된 기업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리기관과 사업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협약 체결기간은 관리기관이 별도로 공지 할 수 있다.)

- 1) 선정된 기업은 “사업 협약서” 및 “사후관리 정보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고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양식은 최종 기업 선정 이후 공유 예정)
- 2) 관리기관은 제출된 사업 협약서를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상이 없으면 사업협약을 체결한다.
- 3) 과제 수행기간은 2025년 11월 30일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나. 선정된 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협약 체결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사업협약 해지 및 취소

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관리기관은 사업협약을 체결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인하여 참여기업이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협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1) 참여기업의 부도 및 폐업
- 2) 참여기업이 사업 과제의 수행을 임의로 포기한 경우
- 3) 과제 수행기간 내에 과제의 수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 4) 과제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되어 초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및 특별한 사유 없이 완료 및 특별한 사유 없이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5) 추진 중인 과제의 목표가 다른 사업용역의 수행에 의하여 사실상 성취되어본 과제수행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 6)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우
- 7) 선정된 이후라도 참여기업 제한 사유에 해당되거나, 신청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 또는 실제 과제 수행내용과 상이하게 작성되어 선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8)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과제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3. 과제수행

- 가. 참여기업은 사업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제 수행기간 내에 과제를 완료하여야 한다.
- 나. 참여기업은 동 사업에 등록된 컨설턴트를 통하여 인증획득 절차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담당 컨설턴트가 명시된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완료보고

- 가. 참여기업이 인증획득을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인증 획득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협약 건에 대한 다음의 서류를 이메일로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완료보고서 1부 (대표자 직인 날인)
 - 2) 성과보고서 1부
 - 3) 인증서사본 1부 (DoC인증의 경우 참여기업의 적합 선언문 사본 1부)
 - 4) 인증심사보고서 1부 (인증심사를 진행한 경우에 한함)
 - 5) 공장심사보고서 1부 (공장심사를 진행한 경우에 한함)
 - 6) 시험성적서 1부 (각 시험규격별로 제출)
 - 7) 각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인증비용, 시험비용, 심사비용 등에 대한 Invoice(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도 가능) 각 1부 (비용청구에 대한 상세항목이 명시되어야 함)
 - 8) 각 해당 기관에 이체한 송금(이체)증빙자료 1부(인증비용, 시험비용 등 지급확인용)

9)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1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통장사본, 개인일 경우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10) 사업자등록증 1부

11) 컨설팅 일지

12) 사업 공고일로부터 과제수행 기간 내에 인증만료일이 명시된
이전 인증서1부 (인증갱신에 한함)

※ 과제수행 마감일(2025년 11월 30일)까지 수취된 이메일까지만 인정

※ 완료보고서 및 제출 필요서류 항목의 경우 필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관리기관은 완료보고서 등 제출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회신)이 없거나 보완 이후에도 제출서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되면 완료 보고를 반려할 수 있다.

5. 사업 참여의 제한

가. 관리기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나. 관리기관은 사업협약이 해지 또는 취소되거나 허위나 부정한
방법 사용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참여기업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한사유

- ▶ 특별한 사유 없이 과제수행(사업협약된 인증 전체)을 포기 또는 실패한 경우
- ▶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한 경우
- ▶ 특별한 사유 없이 행안부 및 관리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
- ▶ 특별한 사유 없이 행안부 및 관리기관의 현장 확인을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 ▶ 정부출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및 목적 외 사용한 경우
- ▶ 인증서, 관련문서의 위변조 및 허위 제출한 경우
- ▶ 시험기관 또는 인증기관과의 담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출연금을 지원받고
인증획득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받은 경우
- ▶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감사기관으로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 ▶ 정부출연금 환수에 불응하는 경우

6. 기타 유의 사항

- 가. 인증획득 완료 후 실제 소요비용의 일부를 정부지원금 한도(협약금액) 내에서 성공조건부로 사후 지급하는 사업임
- 나. 「공공재정환수법」 개정 및 시행(2024.09.27.)으로 부정청구 등*은 관련법에 따라 부당이익금(이자율 포함)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당이익금의 최대 5배)이 부과 징수될 수 있으니, 타 사업과의 중복신청, 과다 청구 등에 유의하여 신청바람
 - * 동일한 내용의 인증획득 소요 비용을 여러 사업에 중복 청구하는 행위, 과다하게 비용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하는 행위 등
- 다. 인증 획득 완료 후 지원받은 제품에 대한 수출실적 성과확인을 위한 수출실적제공 및 성과증명요청에 응해야하며, 미제출 시 차후 동 사업 참여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 사업 종료 후 지원성과 확인을 위한 제출방법 및 기간은 행정안전부에서 별도 공지
- 라. 사업신청 및 선정 후 과제수행 가이드 및 요령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별첨 2 제품 시험기관 자격 기준

제품시험기관(Lab) 자격기준

(DoC 또는 시험성적서만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인증에 한하여 적용함)

- ① KOLAS 등 APAC 및 ILAC에 Full-Member로 등록된 국가기구에서 지정한 시험기관, CBTL 시험기관 또는 국립전파연구원 지정시험기관만을 인정함
- ② 지원규격별 해당 인증기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이 지정범위에 대해 시험을 할 경우, 위 ①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험기관도 인정

* KOLAS 인정분야 확인 : KOLAS (www.kolas.go.kr)

* Full-Member 확인 : APAC (www.apac-accreditation.org/membership/),
ILAC (www.ilac.org/signatory-search/)

* 국립전파연구원 지정시험기관 확인 : 국립전파연구원 (www.rra.go.kr)